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전액 또는 일부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또한, 연금전환시점에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후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은 연금전환시점에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연금전환시점에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③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자로 합니다.

1.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종신연금형 중 개인연금형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2. 종신연금형중 부부연금형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를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하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더 이상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4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전환전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연금전환일이라 하고, 이 특약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일 및 계약해당일은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에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의 보험료를 납입할 때 연금지급형태(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를 선택하여야 하며, 종신연금형 중 개인연금형의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90세 또는 100세)을,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90세 또는 100세) 및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사망 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연금수령비율(50%,70% 또는 100%)을, 확정연금형 중 기간선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을, 확정연금형 중 금액선택형의 경우에는 연금수령비율(5%, 10%, 15% 또는 20%)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④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선택은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하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나이가 모두 연금개시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⑤ 계약자는 2가지의 연금지급형태(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를 복수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 선택 시에는 연금지급형태별 비율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연금지급형태에서의 복수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지급기준표((별표 1)참조)에 의거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 산출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은 연금전환일 이후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
공시기준이율 = 0.5 × 시장금리 + 0.5 × 운용자산이익률
(2)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를 반영한 것으로서,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 직전 3개월의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을 각각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합니다.

$$\text{시장금리} = \frac{A_1 + A_2}{2}$$

A_1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_2 : 국고채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text{가중이동평균이율}(A_i) = \frac{Mi(-3) + Mi(-2)\times 2 + Mi(-1)\times 3}{6}$$

각각의 이율에 대하여 $Mi(-3)$은 직전 3개월, $Mi(-2)$은 직전 2개월, $Mi(-1)$은 직전 1개월 이율

1)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1년)의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합니다.
2) 국고채수익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의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합니다.
3)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산출 월의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수익율」에서 「투자지출율」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율 및 투자지출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합니다.

$$\text{운용자산수익율} = \frac{(2\times\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ext{투자지출율} = \frac{(2\times\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4) 공시기준이율을 기준으로 운용자산의 장래 예상수익률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공시이율이라 하며, 조정이율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합니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상품(제1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제7조【해지환급금】

①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8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9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1조【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1)

연금지급 기준표

■ “연금”(제 5 조)

※ 연금지급형태의 복수 선택시 계약자는 최대 2가지의 연금지급형태(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연금지급형태에서의 복수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선택은 제 2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하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나이가 모두 연금개시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종신연금형

구분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개인연금형	생존연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90세 또는 100세 보증 지급)
부부연금형	생존연금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90세 또는 100세 보증 지급)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70% 또는 100% 지급

2.상속연금형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속연금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 지급]

3.확정연금형

구분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확정연금형 (기간선택형)	확정연금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동안 분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 확정지급)
확정연금형 (금액선택형)	확정연금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전환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지급한도(다만,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5%, 10%,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연금액 선택)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지급

주) 1.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최저한도 : 연금전환일 이후 연복리 1.0%)

2.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연금 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3. 확정연금형 중 기간선택형의 경우 확정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확정지급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연금 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합니다.

4. 확정연금형 중 금액선택형의 경우 연금지급 해당일에 책임준비금이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책임준비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5.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6.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형 중 기간선택형의 경우 확정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확정)지급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연금 연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일시금 수령 신청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일시금으로 선수령할 수 있습니다.
7. 연금지급형태의 복수 선택시 계약자는 최대 2가지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연금지급형태에서의 복수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적 립 기 간</th><th>지 급 이 자</th></tr>
<tr><td rowspan="5">“연금”
(제5조)</td><td rowspan="3">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td><td>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td></tr>
<tr><td rowspan="2">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td><td>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td></tr>
<tr><td>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td></tr>
<tr><td colspan="2">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 + 1%</td></tr>
<tr><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td></tr>
<tr><td rowspan="3">해지환급금
(제7조
제1항)</td><td colspan="2">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td><td>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td></tr>
<tr><td colspan="2">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td><td>공시이율 + 1%</td></tr>
<tr><td colspan="2">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td><td>보험계약대출이율</td></tr>
</table>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8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